

## 2020 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본교 학생 출결상황(지각, 조퇴, 결과)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생 출결상황(지각, 조퇴, 결과) 관리규정**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그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과 하교시각 사이(16:30)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조퇴증)를 담임교사로부터 발급받아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조퇴증)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 처리한다. 단,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 1)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2)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보다 5분 늦게 들어온 경우
- 3)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 4) 수업 중 교과 선생님 허락 후 보건실 이용 - 수업 인정, 외부병원진료 - 병결과

라.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실시일 최소 5일전(주말제외)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할 수 있음.

마. 변경 실시일 :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실시합니다.

2020. 7. 1.

황 등 중 학 교 장

